

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642
----------	------

2017년 2월 22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2월 8일, 이현찬 의원(찬성자 11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7년 2월 22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현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소방안전지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 사항을 반영하고, 운영계획 수립 시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, 계획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. (안 제5조제4항)
- 2)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시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. (안 제6조제6항)

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, 소방대가 출동 전후에 재난 및 사고 발생지역의 신속한 정보 획득 수단으로 사용 중인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고, 운영계획 수립 시 관련 장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하려는 것임.

[표 1] 본 조례 관련 현행 및 개정안

현행	개정안
제5조(사용 권한 관리) ① ~ ③ (생략) <신설>	제5조(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권한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제6조(운영계획 수립) ① ~ ② (생략) 1. ~ 5. (생략) <신설>	제6조(운영계획 수립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7. -----
6. 그 밖에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

- 먼저, 안 제5조제4항은, 권한관리자가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 반영하도록 권한관리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인데,
 - 이는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이 개발(2013.08)되어 운용(2014.01)을 시작한지 약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실제 사용자를 통해 그 동안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


[그림 1] 소방안전지도시스템 설치 및 시스템 운용현황

○ 다음으로 안 제6조제2항제6호는 운영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‘소방안전 지도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하려는 것으로, 장비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화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여겨짐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사용 권한 관리”를 “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권한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제2항 중 제6호의 호 번호를 제7호로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용 권한 관리) ① ~ ③ (생략)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div>	제5조(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권한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</u>
제6조(운영계획 수립) ① ~ ② (생략) 1. ~ 5. (생략)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div>	제6조(운영계획 수립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</u>
<u>6.</u> 그 밖에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<u>7.</u> ----- -